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무1과

(2010. 9. 1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 문 위 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30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9월 6일

4. 근거법령

2010년도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

o 서울시 세무과 - 8808(2010.4.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동 조례안은 민원인의 다양한 납부 편의성을 위하여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감면 대상자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을 추가하여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된 주요내용>

(1)안 제4조에서는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이 공개된 정보로서 공부 등 열람의 제한 규정인 "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 한다" 라는 조항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

(2) 안 제4조1에서는 2010년 2월 8일 카드결제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현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3) 안 제6조제1항제2목에 있는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은 제3목,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은 제4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은 제5목으로 개별적인 목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은 제6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은 제7목,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은 제8목,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은 제9목으로 신설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2010. 4. 22자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카드결제 도입, 수수료 면제 범위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